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11.27.(금) 조간	배포	2026.11.26.(목)	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 자문·신탁감독팀	책임자	팀 장	유승동 (02-3145-6540)
		담당자	조사역	김도영 (02-3145-6547)

'26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

- 2026년 106개 부적격 업체 직권말소 -

[주요 내용]

□ 금융감독원은 **1,863개**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**전수 점검**을 실시하여 **10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***를 **직권말소** 처리하였습니다.

* 금감원 홈페이지(파인) 신고사항 삭제 및 명단 공개할 예정

○ '19.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**매년** 정기 **점검**을 실시하고 있으며,

○ 점검 결과 금융관련법령 및 소비자보호 관련 **법령 위반**,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**과태료 처분**, **폐업** 등의 사유로 **직권말소**된 **업체**는 향후 **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**가 **불가*합니다.**

* 직권말소 처분 이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 대상

□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폐업 및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하여 **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**를 **신속히 퇴출**하고,

○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투자자 **유의사항**을 **안내**하여 **금융소비자 보호**와 **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**

※ **직권말소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 조회방법**

○ 금융소비자 정보포털「파인」(http://fine.fss.or.kr) -「금융회사 정보」-「유사투자자문업자」

1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요

□ **유사투자자문업**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**고객**으로부터 **일정한 대가**를 받고 **금융투자상품***에 대한 **개별성 없는 투자조언**을 하는 업(業)으로,

*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해외선물에 대한 투자조언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미해당

○ 일반투자자문업과 달리 **1:1 투자자문**은 **허용되지 않으며**, '신고제'로 운영되어 **진입문턱**이 **상대적**으로 **낮다**는 특징이 있습니다.

□ '26.7말 기준 **1,863개 유사투자자문업자**가 신고*되어 **영업중**이나 매년 **법령 위반**이나 **폐업 후 미보고** 등 사례가 **다수 발견**되므로,

* 추이(개) : ('19말) 1,826 → ('20말) 2,122 → ('21말) 1,912 → ('22말) 2,087 → ('23말) 2,155 → ('24말) 2,083 → ('25말) 1,706 → ('26.7말) 1,863

○ **신고 유효기간**이 **5년**인 점을 감안하여 **부적격 업체**를 **적기**에 **정비**할 수 있는 **직권말소 제도**를 도입('19년)하였으며, **'24년**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**제도**를 **보완***하여 **운영중**입니다.

*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, 영업규제 신설,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등

> ※ **[참고]** **직권말소 사유**(자본시장법 §101⑨)
>
> ① **금융관련법령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*** **위반**으로 **벌금형 이상 선고 후 집행종료·면제일로부터 5년 미경과**(**법인**인 경우 **임원 포함**)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
>
> *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
>
> ② **국세청 폐업신고**·사업자등록 말소
>
> ③ **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** 미이행(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)
>
> ④ 유사투자자문업자 **보고의무** 등 위반,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, **불건전 영업행위**, **불공정거래 규제** 위반으로 **5년 내 2회 이상 과태료·과징금 부과**

2 '26년 직권말소 처리 결과

□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('26.7월말 1,863개)를 대상으로 **국세청**에 **폐업 여부 조회** 및 **舊 검찰**(現 공소청), **경찰, 공정위** 등에 **법령 위반 이력 조회**를 실시하여 **직권말소 사유**를 **점검**하고,

○ 이들을 대상으로 **사전통지** 및 **공시송달**을 통해 **의견제출 기회**를 **부여**한 후 **검토**를 거쳐 **최종 직권말소 대상업자 106개***를 **확정**하였습니다.

*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(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) 재진입 불가

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사유 및 대상업자 수**

직권말소 사유	폐업	과태료 2회 처분	금융관련법령 위반	합계
업자 수(단위 : 개)	99	1	9	**106***

* 직권말소 사유 중복업자(폐업·법령 위반) 3사 포함

** 직권말소 업체 추이(사) : ('19) 595 → ('20) 97 → ('21) 499 → ('22) 126 → ('23) 103 → ('24) → 136 → ('25) 105 → ('26) 106

3 향후 계획

□ 직권말소 **106개 사업자**에 대한 **금감원 홈페이지**(파인) **신고사항**을 **삭제**하고 **명단**을 **공개**할 **예정**입니다.

□ 아울러,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**폐업 및 법령 위반 이력** 등을 **점검**하여 **부적격** 유사투자자문업자를 **신속히 퇴출**하는 한편,

○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**투자자 유의사항**을 **안내**하여 **금융소비자 보호**와 **건전한** 금융시장 환경을 **조성**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('26.4.20 기배포)

❶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.

□ **유사투자자문업자**는 **제도권 금융회사**가 **아니어서 영업행위 관련 규제**를 **적용받지 않아** 누구나 **신고**만으로 **영업**이 **가능**하고, **이용자 보호**가 **어렵습니다**.

○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, 거래안정성, 건전성은 검증되지 않아 **자문계약 이행 여부**와 **자문 내용의 전문성**은 **보장**될 수 **없으므로 계약 체결 전 유의**해야 합니다.

❷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

□ **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**는 **불법 업체**로 계약 체결 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 **유의**해야 합니다.

○ 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의 **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**는 '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' 홈페이지에서 **반드시 확인**하세요.

※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: (인터넷) 금융감독원 파인 (fine.fss.or.kr) - 금융회사 정보 –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

❸ 목표 수익률 100%, 월 수익 70% 보장, 누적 수익률 500% 제시 등 실현되지 아니한 허위·과장 수익률 표시·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.

□ **유사투자자문업자**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된 회사가 아니라는 점,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**원금 손실 가능성**을 **유념**하세요.

○ **손실 보전** 또는 **이익보장 약속**, **수익 보장** 등 소비자를 **유인·현혹**하는 광고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**신중**히 **검토**하여 결정하세요.

❹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금융감독원등에 신고해 주세요.

□ 유사투자자문업자의 **1:1 자문행위**(미등록 투자자문), **손실 보전·이익 보장·목표수익률** 등의 **광고, 금융회사**로 **오인**하게 하는 **표시·광고**를 하는 행위 등 **불법행위**를 발견한 경우 **증빙자료**를 **확보**하여 **경찰청(☎112) 또는 금융감독원(☎1332)**에 **신고**바랍니다.

※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「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」